위임계약서

㈜티소프트(이하 "위임인"이라 함)와 OOO(이하 "수임인"이라 함)는 민법 제 680 조에 근거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 간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. 본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"위임인"과 "수임인"은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, 기명·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.

	임	시 조		000 구축 (가칭)									
위			건	① "수임인"은 "위임인"에게 상기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다. ② "수임인"은 "위임인"으로부터 위탁받은 전항의 업무 이외에도 민법상 신의성실원칙 에 따른 부수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									
계	약	: 기	간	2022년 05월 23일 ~ 2022년 10월 20일									
계	약	: 일	자	2022 년 05 월 16 일									
위	임			회차	시작	종료	지급일	1	금액	세금(3.3%)	실지급액	비고	
		ні	Q										
		-1	0										
				① 지급일이 토/일/공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한다. ② 일수계산 시 "해당월 투입(철수일 기준)일수 / 해당월 총일 수"로 계산한다.									
장	소 "위임인"과 "수임인"이 사전 합의한 장소												
세	부	사	항	<별첨>위임계약일반조건									
위		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68							주소 :	주소 :			
임		DN 빌딩 11 층 ㈜티소프트											
인	(사업자등록번호 : 378-86-00042)							인	주민번호	주민번호 :			
									입금계3	ᅪ :			
	티소프트 대표이사 (직인)										(서명)	

<별첨>

위 임 계 약 일 반 조 건

제 1조 [계약의 목적]

본 계약은 "위임인"과 "수임인"간에 위탁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[계약범위]

- ① "수임인"은 위임조건에 수반된 분석/설계/구현/테스트, 산출물,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제반부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"수임인"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"위임인"이 제시하는 근무조건, 기술수준, 검수방침, 관리지침 및 기타 "위임인"의 요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3조 [계약기간 및 변경]

- ① 본 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.
- ② "수임인"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, "위임인"과 합의하여야 하며, 합의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로 변경할 수 있다.
- ③ 만약, "수임인"의 사유로 제2항의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, "위임인"은 위임비용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, "수임인"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 4조 [위임비용 지급방법]

- ① "위임인"은 "수임인"에게 본 건 업무 보수로써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중 세법상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(계산서 거래일 경우 VAT 10% 추가)을 "수임인"이 지정한 금융기관 은행계좌에 지급한다.
- ② 위임업무에 소요되는 기계·장비·비품 등은 원칙적으로 "수임인" 비용으로 처리한다.
- ③ "수임인"은 용역의 대가 이외의 어떠한 항목으로도 "위임인"에게 추가적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 5조 [준수의무]

- ① "수임인"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"위임인"의 내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, 이에 반하여 "위임인"에게 손해를 끼치거나,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"위임인"은 "수임인"에게 위임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"위임인"은 "수임인"에 대한 컴플레인 발생 등 문제가 생긴 경우나 업무의 수행에 협의할 사항에 대하여 "수임인"과 협의해야 한다.

제 6조 [계약해제 및 파기]

- ① "위임인"이 본 계약 제 4조 및 제 5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, "수임인"이 본 계약 제 2조 및 제 5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"위임인"과 "위임인"의 고객사간 원청계약의 효력이 중지되었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"수임인"은 "위임인"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 7조 [비밀준수]

- ① "수임인"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 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 또는 기타 관련 정보를 "위임인"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"위임인"과 "수임인"은 자신의 직원, 대리인,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제1항과 동일한 비밀준수의무를 지도록 한다.
- ③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조 하에 결정하도록 하며, 일반 관례에 준하여 시행하며,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"위임인"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 8조 [손해배상]

- ① "수임인"에게서 "위임인"으로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본 건 시스템의 멸실·훼손, 변질 그 밖의모든 손해는 "위임인"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"수임인"의 부담으로한다.
- ② "수임인"은 프로그램 개발 포기,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의 오류, "수임인"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"위임인"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"위임인"은 "수임인"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 9조 [위탁물의 귀속]

-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과 기타 연구성과, 기술성과 및 시작품 등의 제반사항은 "위임인"의 소유로 한다.
- ② "수임인"은 "위임인"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결과로 취득하는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
제 10조 [기타]

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"위임인"과 "수임인"이 협의 후 결정한다..